

일시 : 2016.5.26.(목) 16:00
장소 : 안암동복합청사 4층 강의실

- 2016년 5월 (제36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보고사항	제35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3
2	논의사항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관리 시행 내용	7
3	보고사항	1) 인권백서 발간	17
		2) 청소년 노동조례 공청회	18
		3)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과정	19
		4) (직원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영화 「4등」 단체 관람	20

1. 보고사항

제35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 개최개요

- 일 시 : 2016. 4. 22.(금) 16:00~18:20
- 장 소 : 미래기획실(구청 6층)
- 참석자 : 11명(김덕진, 김은영, 김한민, 목소영, 박현숙, 배미영, 윤성봉, 윤정섭, 이윤하, 최도용, 홍미리)
- 주요안건
 - 조례·규칙 제·개정안 7건 인권영향평가 심의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 회의결과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심의 결과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외 4개 조례 : 원안조정
 -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권고결정(제34호)

권고내용

단원의 임기 만료일 개정에 있어 개정안 ‘만 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을 삭제하도록 권고함(사유 :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 검토 의견

검토의견

- 제3조5항 : ...(생략)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필수적·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로 수정할 것
- 제5조1항 : 청소년노동인권증진민관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 과 ‘청소년 당사자’ 를 추가하여 구성할 것
- 제9조3항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법률지원단을 둔다’ ⇒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으로 법률지원단을 둔다’ 로 수정할 것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인권전시관 조성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추진 결과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

(부서명 : 문화체육과)

심의대상	심의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성북구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권고 결정	○ ‘만 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단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나이에 따른 단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 단체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미수용	○ 본 시행규칙의 개정 목적은 구립남성합창단의 신규 창단과 더불어 기존 구립여성합창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구민 참여 폭을 넓히고자 단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함이었음 ※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 5. 19 공포) - 조례·규칙 심의회 수정의결 : 만 57세 → 만 60세 ○ 구립합창단 등의 역량 유지와 단원들의 전문적인 자질 유지, 단원들간의 상호 융합, 정년제도에 따른 신규 단원의 유입과 기존단원의 고착화 방지 등을 위해서 나이에 따른 임기 규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설립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단원의 임기 및 정년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정년규정(조례 및 시행규칙 등) 현황 : 만 60세(8개구), 만 58세(1개구),	

심의대상	심의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p>만 55세(13개구), 만 50세(1개구), 미규정(1개구), 합창단 미설립(1개구) (2016. 3월 기준)</p> <p>○ 구민의 일반적 수준의 예술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구립문화예술단체에 입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문화 강좌 추가 개설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봄</p>	

(부서명 : 감사담당관)

심의대상	심의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검토 의견	<p>[제3조 제5항]</p> <p>○ ‘----- 특성화고 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p> <p>[제5조 제1항]</p> <p>○ 청소년노동인권증진민관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청소년 당사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것</p>	수용	<p>[제3조제5항]</p> <p>⑤ ---필수적·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제5조제1항]</p> <p>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조합,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p> <p>[제9조제2항]</p> <p>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둔다.</p>	

심의대상	심의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p>[제9조 제2항]</p> <p>○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법률지원단을 둔다.’에서 ‘배치하고’는 삭제하고 성폭력상담사 등을 추가하여 법률지원단을 두는 것으로 정할 것</p>			

2. 논의사항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관리 시행 내용 (질병관리본부)

I.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개요 및 지침 주요 내용

기본 방향	결핵검진 의무화	결핵환자 관리 강화
주요 내용	(대상) 결핵 고위험국(18개) 국민 (방법) 장기 사증 발급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 모든 외국인 결핵환자 (방법)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
[입국 전 사증 심사]	○ 장기 사증 발급 신청 시 - 흉부X선 검사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의 결핵진단서 제출 * 결핵 환자 사증 발급 제한	○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 시 - '결핵완치확인서' 요구 - 완치/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 제한
[입국 단계]		○ 입국 시 완치/완료 여부 확인 - 입국단계에서 중점관리대상자가 입국시 체류예정지 보건소 연계 - 체류예정지 보건소에서 결핵검사시행·조치
[체류 관리]	○ 단기 사증으로 입국 후 장기 사증 변경 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결핵 확인서' 제출 * 결핵환자인 경우 '치료예정서약서' 징구	○ 신고된 모든 외국인 결핵 환자 -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 (치료 비순응) 입국금지대상 지정 요청 가능, 전염성 소실 후 출국 조치 -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해제) 결핵치료가 완치/완료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해제

< 법적근거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42조(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등

II. 외국인 결핵 검진

1. 추진 방향

-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 당국과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이에,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18개국)* 외국인으로 입국 전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결핵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결핵이 확인된 경우 입국 금지 및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선제적인 해외유입 결핵 차단 조치로 국내 결핵 전파 차단
 - ※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¹⁾

2. 보건소 결핵검진 시행 방법

1. 의무 검진 대상 및 제출 서류

- (대상)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장기 체류자격(유학, 취업 등)으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단,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 의무 검진 면제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시행('16. 3. 2.) 이전 장기 체류자이던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의무 검진 대상
- (제출 서류) 보건소가 발급하는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

1)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은 비공개로 문서로 자료제공 불가함을 통지 받음(2016.5.23.)

비공개 사유 :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은 내부 업무처리 지침으로 행정자치부 발간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27페이지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공개/비공개 결정 해설내용에 의거 "사증·체류관리 등 권한의 행사는 비공개 가능"함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결핵 고위험국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18개)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2. 결핵 검진 방법

- 흉부 X선 및 객담 도말검사(AFB smear) 동시 실시

3. 흉부 X선 및 객담 도말검사 결과에 따른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

4. 결핵 진단 시 조치

- 환자 신고

-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환자 신고

* 단, 중점관리대상자 등록을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중 하나는 필수 수집

- 결핵 치료

- 보건소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함. 단, 다제내성 결핵 등 결핵전문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치료 경과 모니터링 철저

- 환자 치료 시 월 1회 이상 방문 치료 안내

※ 결핵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치료예정 서약서'를 징구

- 체류자격 한시적 허용 : 치료예정 서약서 제출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체류자격 6개월 허용하고 이후 보건소의 '결핵 확인서' 징구를 통해 치료순응도 확인 후 재연장 결정

5.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서식 1.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중 치료경과 부분)

- (대상) 결핵으로 진단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징구한 자

- (작성 방법)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경과 기재

- (치료 중) 치료 순응여부 체크, 치료 비순응자의 경우 비순응 사유 기재

* 단, 다제내성 결핵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 경과 확인하여 보건소가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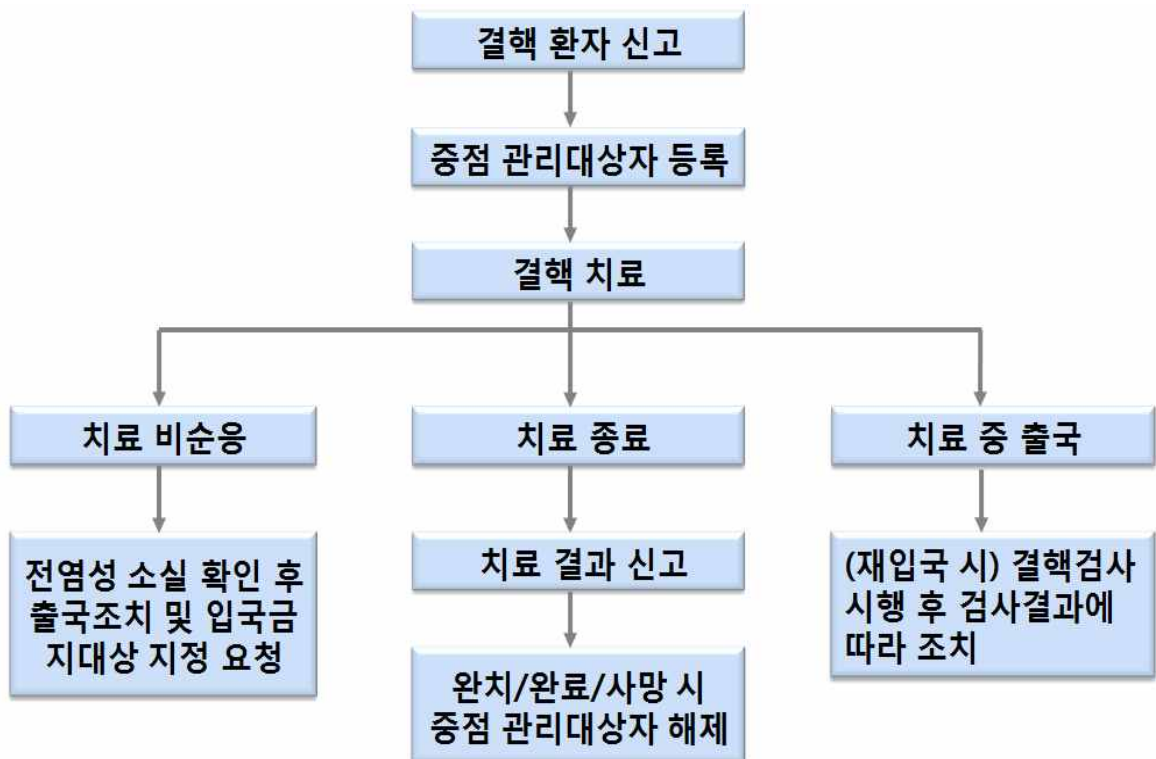
- (치료 종료) 치료 결과 기재

Ⅲ.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체류단계)

1. 추진 개요

- (중점관리대상자 등록·해지) 결핵으로 신고된 모든 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 결핵 완치·완료 확인 시 '중점관리대상자' 해제
- (치료 비순응자에 대한 조치) 치료 거부 또는 중단시 전염성 소실 확인 후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대상' 지정 요청
 -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 전염성 소실 시까지 격리치료는 국립결핵병원 등 활용
-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시 결핵여부 확인) 국내 검역단계에서 체류예정지 보건소와 연계하여 결핵검사 시행 등을 통해 결핵여부 확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 * 본 지침의 'Ⅳ.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 시 조치사항' 참조

< 국내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흐름도 >



2. 중점관리대상 등록·해지

- (등록 대상)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
- (등록·해지 절차) 외국인 결핵환자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결핵완치·완료 확인시 해제요청
- (시행 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과 해제시 법무부에 요청
- (체류지 보건소 조치사항)
 - 외국인 결핵환자 신고시 필수정보 확인
 - * 병·의원에서 신고되는 외국인 결핵환자 신고서에 중점관리대상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중 하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외국인 결핵환자의 치료결과 보고·관리

3. 치료 비순응자에 대한 조치

□ 적용 대상

- 치료목적 입국자, 치료 중단 또는 거부자, 치료 중 연락 두절자 등

□ 원칙

- 전염성 소실 확인 후 출국 조치, '입국금지대상' 지정 요청

□ 조치

① 전염성 소실 확인 후 출국 조치

- (비순응자 등록) 체류지 보건소에서 비순응대상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비순응 관리 대상자'로 등록
- (입원명령 실시 및 격리치료) 국립마산병원 등 보건소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입원명령 실시 및 격리입원치료
 - (체류지 보건소) 국립마산병원 등 보건소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입원명령 실시
 - * (비용) 환자 후송 및 입원 치료 비용은 국가결핵예방 예산 활용

- (입원 의료기관) 대상자 격리입원치료 후 전염성 소실 확인되면 창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체류지 관리 보건소에 통보

* (전염성 소실 기준) 입원명령해제 기준과 동일

- (강제 퇴거 조치)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 강제 퇴거 조치

② '입국금지대상' 지정 요청

-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로 공문으로 입국금지대상으로 지정 요청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비순응 관리 및 입원명령 실시 이력'으로 대상자 확인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입국금지 요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입국 금지대상자 해제는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IV.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시 조치 사항

1. 추진배경

- 결핵 완치 또는 완료판정 받기전 출국 등 사유로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재입국시 결핵완치·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에서의 전파차단

2. 추진 내용

- 대상 :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재입국하는 경우
- 내용 : 중점관리대상자가 입국시 입국단계에서 체류예정지 보건소에 연계하여 결핵검사 시행하고, 결핵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 * 중점관리대상자가 시증발급 신청시 재외공관 지정병원의 결핵완치 확인서 제출요청, 결핵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의료관광(C-33) 목적도 시증 발급 불가하여 결핵인 경우 입국제한시행 (법무부)
- 절차
 - 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국립검역소에 중점관리대상자 입국 사전 통보
 - ② (검역소) 대상자 확인 후 검역관 인계하에 임시 격리조치,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 통보

- ③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체류예정지 보건소에 통보
- ④ (체류예정지 보건소) 결핵검사 시행, 결핵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 상황별 조치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와 협의

【 법무부 입국심사시 조치절차 】

-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중점관리대상자 등 입국 시 국립검역소에 통보**
 - 통보대상 : 중점관리대상자,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를 요청한 자
 - 통보방법 : 입국장을 관할하는 국립검역소에 팩스 등을 통해 입국 전 통보
 - 통보 후 조치
 - 검역 단계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입국 심사과정에서 법무부 담당자가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재통보하여 대상자 인계

※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

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결핵예방방법>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1 보고사항

인권도시 2년보고서(백서) 발간 보고

- 추진근거 : 인권조례 제15조(2년마다 발간, 제1호 : 2014년 4월 발간)
- 발간내용 : 해당기간(2014년~2015년) 추진하였던 인권정책 관련 사업
- 추진일정
 - 2016. 3월~5월 : 원고작성 및 편집
 - 2016. 6월 : 발간
- 주요내용 : 인권센터 소개, 주요 연혁, 인권도시, 인권위원회 활동, 청소년 노동인권,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등
- 발간부수 : 200부
- 배부처 : 성북구 유관기관, 인권단체 등
- 활용방안 :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및 인권증진 정책 홍보
- 사업비 : 5,000천원

3-2 보고사항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 일 시 : 2016. 6. 2.(목) 오후 3:00~ 5:00
- 장 소 : 아트홀(구청4층)
- 세부진행

구분	주 제	발표 및 토론자
주제발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설명	윤 성 봉 (변호사, 성북구인권위원)
지정토론	청소년 노동인권 현장 및 문제해결 과제	송 호 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	김 일 영 (구의원/행정기획위원장)
	청소년(청년) 노동보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양 지 윤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 사무국장)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실효성 방안	박 광 섭 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역할	조 병 진 (대일관광고 교사)
질의응답 자유토론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사 회 자

3-3 보고사항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 지킴이 양성교육과정(4기)

- 교육대상 : 청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
- 교육인원 : 25명
- 교육장소 : 성북구 평생학습관 소강의실
- 교육기간 : 2016. 6. 2.(목)~ 6. 30.(목), 매주 화·목, 오후 5시부터 7시
- 위탁기관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위탁금액 : 3,390,000원)
 - 기획위원 구성·운영 : 교사, 지역 교육 및 인권전문가, 구청인권센터 등
- 수료증 : 총 9강 중 7강 이상 출석 수강생에게 발급
- 세부교육내용

분류	일정	프로그램명	목적 및 활동
문턱 넘기 (2회기)	6. 2.(목)	오리엔테이션	동기부여, 친밀감 형성, 설문조사방법
	6. 7.(화)	노동이 부끄러워요?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 제고
툏아보기 (3회기)	6. 9.(목)	노동인권 수레바퀴 우리는 어디로	청소년 노동현황 파악
	6. 14.(화)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 1	노동법 살펴보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사례 나누기
	6. 16.(목)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 2	실제상황으로 역할극(모의노사교섭)
빛장열기 (2회기)	6.21.(화)	상담의 기본 원리와 자세	도움 주는 대화법, 공감능력 높이기
	6. 23.(목)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3	서울노동권익센터 탐방
날개짓 (3회기)	6.28.(화)	청소년 노동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관내 청소년 유동인구 많은 곳 (캠페인 활동을 통해 내 친구의 아르바이트를 이해하고 실천 활동을 모색)
	6.30.(목)	모니터링 분설결과 및 소감 나누기	내 친구의 아르바이트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 도출 및 소감 나누기 후속 활동 안내
		사례 발표	수료식

3-4 보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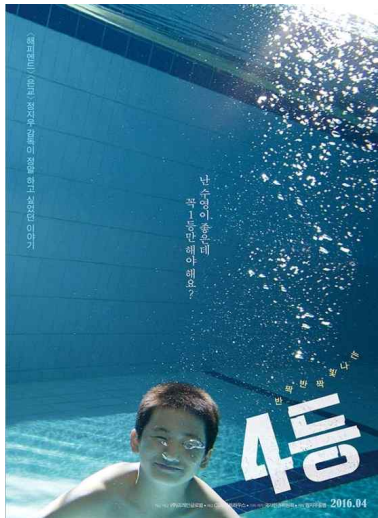
(직원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영화 「4등」 단체 관람

■ 추진배경 :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으로 아이키우는 습관을 위하여 실시

■ 관람계획

- 일시 및 장소 : 2016.5.27(금)~5.30(월) 15:30~17:30, 아리랑시네센터 3관
- 관람 대상 : 희망직원 240명(회당 120명)
- 영화 내용

4등(4th Place, 2015), 정지우 감독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4등이 뭐, 나쁜 건가요?”

“4등?! 너 인생을 그렇게 꾸리꾸리하게 살 거야? 수영을 좋아하는 준호와 준호를 뒤흔달하는 엄마, 흐트러진 수영코치의 삶의 모습이 잔잔하지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 출연 : 박해준, 이항나, 유재상, 최무성 등 / 상영시간 : 116분

· 제작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 네티즌 평점 : ★★★★★ 9.02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권고

의안번호 제2016-3호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주 문

1.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 제2항 ‘만 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단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나이에 따른 단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단체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예술 창달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하여 주민들이 자유로이 예술활동을 펼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 항목이 단원의 연령을 57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다.

이러한 문화예술단체 단원이 일정한 정도의 예술적 역량과 실력을 겸비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이의 많음과 상관 관계가 없다. 각 예술 단체의 단원의 임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예술적 역량, 조직 참여 정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이 제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57세 이상의 주민이 예술 역량과 활동 의지가 있더라도 성북구가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입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나이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단원의 임기는 나이에 따라 제한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II. 권고의 주요 내용

○ 제9조 제2항

‘만 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단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나이에 따른 단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단체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4. 22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구분	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648호
공포일자	2016-05-1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 가. 성북구립남성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여 합창단의 구성과 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 임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 나.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예술단체원의 임기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단원의 임기 만료일 개정(안 제9조제2항)
 - (현행)만 55세가 되는 12월 31일 ⇒ (개정)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 나.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에 남성합창단 신설(별표 1)
- 다. 예술단체의 임원에 남성합창단의 임원 규정 신설(별표 2)

□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64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만55세”를 “만60세”로 한다.

별표 1의 실버합창단란 다음에 남성합창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생략]

별표 2의 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란 다음에 남성합창단란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전>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서울특별시성북구규칙 제642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4.]

제2조(사무관리)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사무관리는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제3조(종류 및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전문개정 2010.8.4.]

제4조(공연) 예술단체는 정기공연외에 필요할 경우 특별공연(기획공연, 순회 공연, 위문공연, 찬조 공연, 협연 및 외부 초청공연 등)을 실시한다.

제5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합창단원은 모집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4)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응모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cm×4.5cm) 1매
4.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제6조(전형방법 등)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기와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최종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능심사위원) ① 제5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8.4)

③ 예능심사위원은 신규단원 모집 시 예술적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장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0.8.4)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제9조(단원의 임기) 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임기는 만5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단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26)

제10조(임원회) ① 각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단장, 지휘자(연출가)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단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0.8.4)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11조(수당지급 등) ① 예술단체 단원에 대해서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②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구립예술단체 후원회)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북구립예술단체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립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성북구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2010. 8. 2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26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

[별표 2] 예술단체 임원

[별표 2] <개정 2013.8.26>

예술단체 임원(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원	비 고	구 분	임 원	비 고
교향악단	단장	1명	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	단장	1명
	지휘자	1명		지휘자	1명
	악장	1명		총무	1명
	수석	10명		소프라노 파트장	1명
				메조소프라노 파트장	1명
				알토 파트장	1명
극단	단장	1명	합주단	단장	1명
	연출가	1명		지휘자	1명
	기획	1명		전임강사	1명
	수석	5명			